



공정경쟁연합회
FAIR COMPETITION FEDERATION

2013 January Journal of Competition 경쟁저널

제166호

신년사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상중계

ICR센터의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국제세미나
제2회 '혁신-경쟁-특허 : 3자의 관계'

스포츠라이트

Peter D. Camesasca, Julie Vandenbussche
스마트폰 생태계 전쟁과 새로운 EU 경쟁법 쟁점

포커스

정종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자 등 감면의 요건

박성민

제약회사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평가와 유형 분석

국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

최승재

특허에 대한 합의의 경쟁제한성 판단

글로벌 경쟁 리포트

김용상

미국 경쟁법의 주요 이슈 : 민사소송

홍순강

일본 독점금지법상의 기업결합 동향 ②

대법원 판결 다이제스트

윤인성

대법원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2. 11. ~ 12.)

미국 경쟁법의 주요 이슈 : 민사소송

Arnold & Porter LLP, 미국변호사 | 김 용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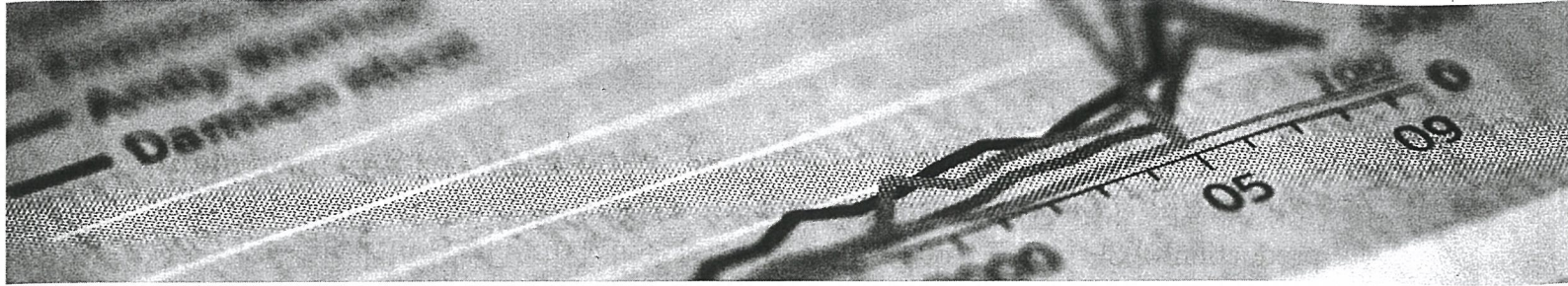
I. 서론

미국에서 경쟁법 이슈가 주(主) 쟁점이 되는 민사소송(Civil Litigation)은, 사인(私人)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법무부 반독점국(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DOJ) 등 연방기관, 그리고 주 검찰(State Attorney General)과 같은 주(州) 기관에 의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경쟁법적 이슈들은 기업결합에서부터 지적재산권, 그리고 가격담합 등의 경쟁법상 형사적 위반행위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기업결합 전에 대하여 연방 및 주 경쟁법 집행기관 혹은 사인이 경쟁법적 위해(competitive harm)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유로 기업결합금지소송을 낼 수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는 경쟁법 위반이 거의 빠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counterclaim) 근거로 제시된다. 가격담합 등 하드코어(hard core) 경쟁법 위반행위가 법무부 반독점국에 의하여 조사되기 시작하면, 동 행위에 의한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집단소송(class action)이 뒤이어 제기된다.¹⁾ 또한 민사집단소송이 제기되면 각 주의 검찰들도 주민(州民)들을 대표하는 부권소송(parens patriae) 등을 별도로 시작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의 경쟁법 이슈는 광범위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에 민사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쟁법적 이슈들을 한번에 모두 다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민사소송의 거시적 틀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경쟁법 집단소송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만을 다루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응하기에 곤란을 겪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에 집중하고자 한다. 절차적 이슈(issue) 중에서는 증거개시(discovery)와 합의(settlement)에 대하여, 그리고 실체적 이슈 중에서는 3배소 소송(treble damages action)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²⁾

1) 클레이튼법(Clayton Act) 5a조 (section 5a)에 의하여 법무부 반독점국의 형사조사에서 유죄가 입증된 내용들은 뒤이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이미 그 자체로 상당한 증거 능력(prima facie evidence)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담합 관련 형사조사가 담합 가담자들의 자진신고(leniency)와 유죄협상(plea agreement)으로 종결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원고들의 입증책임(burden of proof)에 대한 부담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입증책임에 대한 낮은 부담이 더욱 많은 민사집단소송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이외에도 관할권(jurisdiction), 특히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추세를 볼 때, 물적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과 역외적용제한 법률, FTAIA(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s Act)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FTAIA와 미국 법원의 물적 관할권에 대해서는 필자의 2011년 1월 <경쟁저널> 제154호 기고문 “미국의 반독점법 역외적용 제한 법률(FTAIA) 및 주요 사례 분석”을 참조하기 바란다.



II. 민사집단소송의 절차와 주요 이슈

1. 소장, 답변서, 기각신청(complaint, answer and motion to dismiss)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complaint)을 접수함으로써 시작 된다. 그러나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상의 기한(deadline)이 기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소장이 접수된 때부터가 아니라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serve)된 시점부터이다. 소장 전달 후 피고는 기각신청(motion to dismiss)³⁾ 혹은 소장에 대한 답변(answer)을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기각신청을 통하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거나, 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는 소송들은 걸러지게 된다. 기각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 피고는 소장에 나와있는 주장들에 대한 답변서(answer)를 제출해야 하며, 곧이어 증거개시절차가 개시된다.⁴⁾

2. 증거개시(discovery)

우리나라의 소송과 미국의 소송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바로 증거개시 절차를 들 수 있다. 미국의 민사소송에서의, 특히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서의 증거개시는 방대한 양의 문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법률비용 및 기타 비용 또한 막대하다. 때로는 증거개시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소송의 다른 절차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합친 것보다도 큰 경우도 있다. 그 막대한 비용만큼이나 소송의 승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가 바로 증거개시절차인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상대방에게 증거를 공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최근 Kolon과 DuPont의 소송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증거인멸(spoliation)로 인한 증거개시 방해 제재(discovery sanction)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윤리적 의무를 차치하고 순전히 경제적·법률적 파급효과(ramification)만을 놓고 보더라도, 증거개시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아니면 패소하는 경우라도 피해를 최소

3) 미국 법원에서의 Motion to dismiss는 우리나라 소송의 기각과 각하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4) 인적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등에 관한 쟁점이 있는 경우는, 기각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일 때도 인적 관할권 문제에 국한된 제한적 증거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증거개시는 문서 보존(document preservation), 수집과 검토(collection and review), 그리고 제공(production)의 3단계로 구성된다. 집단소송에서의 증거개시의 범주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①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변론에 관련이 있으면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고(any nonprivileged matter that is relevant to any party's claim or defense) ②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는데 합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reasonably calculated to lead to the discovery of admissible evidence) 것을 포함한다. 증거개시의 의무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때(reasonable anticipation of litigation)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 또는 소송이 이미 제기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때 증거개시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 때부터 소송 당사자는⁵⁾ 문서보존 요청서를 관련 문서와 자료를 가지고 있을만한 임직원들에게 발송하고, 회사의 e-메일과 전자문서 시스템의 자동 삭제기능을 정지시키는 등의 문서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서 보존의 경우 회사 운영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서의 수집과 검토는 소송 상대방과의 협상(meet and confer)을 통하여 최대한 범위를 좁혀서 법률비용을 줄이고, 문서 제공으로 인하여 불리한 증거가 제공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옳다. 증거개시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연방민사소송규칙 37조 (b)(2)(A)항에 따라 다양한 제재(예를 들면, 증거 배제(preclusion of evidence), 벌금(fines),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부담(attorney fees), 입증책임 전가(shifting burden of proof),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s), 주장이나 변론의 삭제(striking claim or defense), 기각(dismissal)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개시는 문서보존절차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증인심문(depositions), 집단인증(class certification),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 재판 및 항소(trial and appeal)

문서를 통한 증거개시(document discovery and interrogatory)가 일정부분 진행되고 나면, 증인심문(deposition)을 통한 증거개시가 시작된다. 개인이 아닌 회사가 소송 당사자인 경우는,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인 증인(percipient witness)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외에도 '30(b)(6) 증인심문'이라는 것이 있다. 이 증인심문

5) 증거개시의 의무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존재한다. 그러나 집단소송에서는 피고가 원고보다 종종 훨씬 많은 양의 문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burden)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증거개시의 의무는 합리적 범주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의 주장 또는 변론과 관련한 연관성이 부족하거나(irrelevant),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데 발생하는 부담이 지나치게 클 경우 소송 당사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증거개시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강제제출요청(motion to compel)이 제기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은 연방민사소송규칙 30조 (b)(6)항에 의거한 것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를 대표한 증인이 대답한 내용은 회사가 직접 대답한 것으로 대표성을 인정받는데, 즉 그 증인의 대답이 회사를 구속(binding)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의 지식에 한정된 내용보다는 오히려 회사의 지식(knowledge of the corporation)에 관하여 심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부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 대표로 내세울 증인에게 그 내용을 교육시켜 심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단인증(class certification)은 집단소송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절차임과 동시에 집단소송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집단인증'이라는 것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집단(class)이, 과연 법적으로 하나의 소송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한 집단인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이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공동의 증거(common evidence)로 피해입증이 가능한 가이다. 집단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원고는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부분의 집단소송에서 개개인의 피해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집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옳은 판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집단인증 거부(denial of class certification)는 곧 사건의 기각(dismissal)과 직결된다. 물론 집단인증이 거부된 후에도 원고가 주장한 집단(alleged class)의 각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시킬 수는 있다. 개개인이 배상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소송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규모가 큰 경우라면 집단인증과 상관없이 소송이 계속된다. 예를 들어, 시계가격에 대한 담합이 있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개개인의 시계 구매자들은 집단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포기할 확률이 높지만, 시계 중간유통상들이 생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집단소송과정에서 나타나는 직접소 원고 소송(direct action plaintiff suit) 혹은 법원의 집단인증이 있는 후에 집단에서 탈퇴하여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는 '탈퇴자 소송(opt-out suit)'이라고도 한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제조 대기업들이 피고로 제소되어 있는 브라운관(cathode ray tube) 가격담합 민사집단소송의 경우 현재 법원이 집단인증신청을 검토 중으로, 이미 Sears, Costco, Bestbuy 등의 대규모 소매업체들은 집단소송과 별도로 직접소송을 제기하였다. 각 회사의 구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담합으로 인한 추정 피해액이 소송비용보다 많고, 집단소송에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회복할 수 있는 액수보다 스스로 로펌(law firm)을 선정하고 재판 및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얻게 될 혜택이 크다는 판단에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증거개시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 그리고 집단소송의 경우 대체로 집단인증절차가 종료된 후 - 원고나 피고는 배심원 재판의 필요 없이 법원이 판결을 내려달라는 약식판결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을 할 수 있다. '약식판결'이란, 사실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서(no genuine issue of material fact), 법률적 판단만으로 소송을 종결 지을 수 있을 때, 배심원의 사실판단절차를 생략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일

권한다. 약식판결에서 승리한 경우 재판에서 이긴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앞서 언급한 기각신청은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리더라도 원고는 흠결이 있는 소송요건을 보충하거나 소장의 내용을 수정하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⁶⁾ 이에 반하여 약식판결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해당 소송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된다. 따라서 항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원고는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약식판결을 통하여 소송 자체에 대한 판결이 날 수도 있지만, 소송의 일부 주장들에 대해서만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도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이슈들이 많이 줄어들어는 유용한 효과가 있다.

기각신청과 약식판결신청을 모두 거쳐 재판에 다다른 경우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판단하고, 법률적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재판에 유·무죄의 사실적 판단을 하는 배심제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결정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형사재판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 배심원 제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 합의(Settlement)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재판에 이르기 전에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민사집단소송에서는 더욱 그러한데, 그 이유 중 하나로 담합 가담자들에게 공동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지우는 미국법의 가혹함을 들 수 있다. 공동연대책임으로 인하여 담합 가담자 중에서 한 회사에게 담합으로 인한 모든 피해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위험 노출이 천문학적 액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소송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피고는 이른 합의(early settlement)를 최선의 목표로 삼는 경우도 발생한다. 합의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재판의 확정 판결 및 지급 전까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각신청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집단인증신청이 접수되고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 그리고 약식판결신청이 접수되고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의 세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가져올 결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모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민사집단소송 분야에서 최근 눈 여겨 볼만한 사건으로는 LCD 담합 사건과 관련된 두 재판을 들 수 있다. AU Optronics의 형사재판과 Toshiba의 직접구매자 민사집단소송(direct purchaser class action) 재판이 그것으로, AU Optronics는 재판에서 패하여 가격담합으로 인한 형사사건 역사상 최고액의 벌금인 5억 달러를 부과받았다. 재판보다는 법무부 반독점국과 유죄협상을 하였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다. Toshiba의 경우 또한 민사재

6) ‘Dismissal with prejudice’인 경우 원고는 그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지만, ‘Dismissal without prejudice’인 경우 흠결이 있는 소송요건을 보충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에서 패하였다. 그러나 배심원 평결액수가 8,700만 달러였던 것에 비하여 재판 후 곧 원고측과 3,000만 달러의 액수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배심원의 평결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Toshiba가 주장하였던 공동연대책임에 근거한 평결액 감액을 들 수 있다. Toshiba는 가격담합 집단소송에서는 공동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심원이 산정한 8,700만 달러는 LCD 담합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원고측이 이미 다른 피고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배상액만큼은 배심원 평결액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액수에 대하여 Toshiba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LCD 사건의 합의액수(settlement amount)는 이미 오래 전에 8,700만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⁷⁾ Toshiba가 원고에게 지불할 금액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외면적 주장 때문만이었는지 아니면 소송 당사자들만 알고 있었던 다른 요소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Toshiba는 특이하게도 재판 이후에 배심원의 평결액보다 5,700만 달러나 적은 3,000만 달러에 합의하였다. 경쟁법 위반 민사집단소송에서 재판까지 가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준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III. 민사집단소송의 경쟁법 이슈: 3배소 소송(treble damages action)

경쟁법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원고는 경쟁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an antitrust violation), 그로 인한 피해(antitrust injury), 그리고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damages)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민사집단소송은 이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형사조사에 의하여 경쟁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상태에서 제기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피해와 손해배상액의 두 가지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한 민사집단소송이 재판보다 합의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 그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피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클레이튼법 제4조⁸⁾를 들 수 있다. 3배소 소송으로 인하여 담합 관련 소송의 피고로 지명된 회사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의 3배를 배상할 위험에 노출되는 데다가, 공동연대책임의 위험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고들이 재판보다는 합의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3배소 소송은 연방법 하에서는 직접구매자(direct purchaser)에 의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 직접구매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하노버 슈(Hanover Shoe)⁹⁾와 일리노

7) LCD 직접구매자소송에서 Toshiba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미 Sharp는 1억 500만 달러, 삼성전자는 8,270만 달러, LG Display는 7,500만 달러, 그리고 Hitachi는 2,800만 달러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원고 측과의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였다.

8) "any person who shall be injured in his business or property by reason of anything forbidden in the antitrust laws may sue ... and shall recover threefold the damages by him sustained, and the cost of suit,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

9) Hanover Shoe, Inc. v. United Shoe Machinery Corp., 392 U.S. 481 (1968).

이 브릭(Illinois Brick)¹⁰⁾ 판결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하노버 슈 사건에서는,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신발 제조업체인 하노버 슈가 신발제조기계를 판매하는 유나이티드 슈 머시너리(United Shoe Machinery)를 상대로 경쟁법 위반 민사 3배소 소송(treble damages action)을 제기하였다. 하노버 슈는 유나이티드 슈 머시너리가 신발제조기계를 판매·임대하는데 있어서 경쟁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신발제조기계 시장의 독점화(monopolization)를 꾀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노버 슈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나이티드 슈 머시너리는 반론 중 하나로 불법적 독점화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신발제조업체인 하노버 슈는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신발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전가(pass-on)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노버 슈가 입은 피해액(신발제조기계에 대하여 더 지출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할지라도 유나이티드 슈 머시너리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하노버 슈의 이윤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유나이티드 슈가 제기한 피해전가 주장에 근거한 방어(pass-on defense)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하노버 슈 사건을 통하여, 미국 연방법원의 경쟁법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방어적 피해전가(defensive pass-on)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일리노이 브릭 사건에서는 하노버 슈의 방어적 피해전가 주장을 원고가 공격적으로 제기(offensive use of pass-on argument)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다. 일리노이 주 정부와 700여개의 지방정부기관들은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격담합에 근거한 3배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근거는 제조업체들의 콘크리트 블록에 대한 가격담합으로 인하여 일리노이 주와 지방정부기관들이 콘크리트 석조 건물을 구입하는데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콘크리트 블록은 제조업체가 제작하여 석조공사 계약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이는 다시 하청업체에 판매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일리노이 주와 지방정부기관들은 건물을 구입할 때 완제품(건물)의 일부로 자신들에게 콘크리트 블록이 포함(incorporate)되어 넘겨졌고, 이 때 담합으로 인하여 인상된 콘크리트 블록의 불법적 가격 상승분이 원고들에게로 전가(pass-on)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하노버 슈의 방어적 피해전가 주장이 이유 없듯 일리노이 주의 공격적 피해전가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 이후 간접구매자(indirect purchaser)는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standing)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간접구매자는 소위 ‘일리노이 브릭 폐지법(Illinois Brick repealer statute)’을 제정한 주(州)법¹¹⁾에 근거하여야만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¹²⁾ 이것을 미국 경쟁법에서는 ‘일리노이 브릭의 간접구매자 손해배상소송 금지 판결(Illinois Brick indirect purchaser bar)’이라고 부른다.

10) Illinois Brick Co. v. Illinois, 431 U.S. 720 (1977).

11) 일리노이 브릭 사건 폐지 주(州) 중 하나로 캘리포니아 주를 들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쟁법인 카트라이트법(Cartwright Statute)의 일리노이 브릭 폐지 조항과 관련한 판례에 대해서는, <경쟁저널> 제163호에 게재된 필자의 글, “미국 경쟁법의 구조와 집행” 8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간접구매자 소송(indirect purchaser suit)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피고로 제소되어 있는 다수의 집단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는 부품가격담합으로 인하여 완제품 회사를 제소할 수 없지만, 최근의 부품가격담합 사건(DRAM, SRAM, LCD, CRT 등)에서는 부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완제품 제조업체들도 소송에서 피고로 제소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한 업체 내에서 부품과 완제품이 동시에 생산·판매된 경우에, 일리노이 브릭 사건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미국의 연방법 판례가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¹²⁾ 또한 부품이 완제품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구성한 그 동안의 사례들과는 달리, 최근의 사건들에서는 부품가격이 완제품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LCD 패널이나 CRT 튜브가 LCD, CRT TV와 모니터에서 차지하는 비중)가 있다. 하나의 부품이 완제품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노버 슈와 일리노이 브릭 사건의 법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일리노이 브릭 판결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주법 하에서의 피해전가로 인한 손해배상액 결정에는 영향을 미친다. 원고의 피해액 전가로 인한 손해액 주장 입증은 훨씬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판례들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결론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집단소송과 3배소 소송 등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식의 증거개시제도가 그 자체로 우리나라에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이지만, 집단소송과 3배소 소송은 충분히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원고의 입장에서든 피고의 입장에서든, 아니면 변호인의 입장에서든 새롭게 도입될 만한 경쟁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미국의 경쟁법 소송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본고에서 언급된 미국 대법원의 판결들과 최근 사건들이 미국 경쟁법 민사소송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2) 간접구매자라고 할지라도, 연방법원에서 가격담합으로 인한 계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금지처분소송(injunctive relief suit)은 제기할 수 있다. 일리노이 브릭의 간접구매자 손해배상소송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간접구매자들도 연방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있다. 이것은 연방법원의 보충적 관할권(supplemental jurisdiction)을 이용하여 연방법 하의 금지처분소송을 제기하고, 주법 하에서 주장이 가능한 손해배상소송을 연방법원에서 동시에 제기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13) 부품가격담합 사건에서 한 업체가 부품과 그 부품을 이용한 완제품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경우에, 일리노이 브릭 사건의 예외가 인정되는가의 이슈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다음의 사례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In re Sugar Industry Antitrust Litig., 579 F.2d 13 (3d Cir. 1978); In re Linerboard Antitrust Litig., 305 F.3d 145 (3d Cir. 2002); Royal Printing v. Kimberly Clark Corp., 621 F.2d 323 (9th Cir. 1980).